



유형

기업

ID

2024년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통계법」 제18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공계인력 기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활용하고 있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용, 채용, 처우 등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의 육성·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서 수집된 결과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귀사의 응답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8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주)메트릭스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회신처	이현진 차장 (☎) 02-2017-1807 (F) 02-6919-2642 (E-mail) kistep@metrix.co.kr

※ 기업 일반현황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현황이 아닌 기업의 일반현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 법정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종업원 수는 다수사업장 보유 기업의 경우 지사, 공장 등 소속된 모든 상시근로자를 집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연구개발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과제(시험생산 및 상업화 단계의 과제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다년도 사업이 포함된 경우, 1년 단위로 연구비를 계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명			법정유형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설립년도	년									
소재지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주소	시/군/구		상세주소						
업 종	※ [보기카드] 참고									
종업원 수	()명		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안내] 본 조사에 응답하시기 전, 아래 설명을 읽고 조사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대상 및 조사 범위

- ① 본 조사의 대상은 “2024년 기준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입니다.
- ② 응답은 “연구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인력 운용 담당부서 책임자”께서 해 주십시오.
각 응답을 부처(서)별로 나누어 응답이 필요하신 경우, 총괄자께서 조사된 내용을 취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③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합산하여 작성해 주시고,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본 조사의 응답 단위는 본사, 지사, 영업소 등을 포함한 기업체 단위입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체는 해당 사업체를 기준으로, 법인 기업체는 동일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본사, 지사, 영업소, 사업소 등)를 합산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설문의 응답 기준 시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개발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기준입니다.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정의

본 조사는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조사로, 다음 연구개발인력 및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정의를 포괄합니다.

① 연구개발인력 : 직접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합한 총 인력규모

연구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람
연구 보조원	- 연구지원·기능인력 : 연구원은 아니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의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연구개발 보조자 - 연구행정 및 기타지원인력 : 연구원은 아니나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행정, 연구회계, 연구지원 사무 등을 포함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이공계 전공자

본 조사에서 이공계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졸업자를 의미하며,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공 분류를 따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계열	농림·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물·화학·환경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운송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금속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에너지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의약계열	간호	간호학
	약학	약학
	치료·보건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다음은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고용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사의 전체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Q1. 귀 기관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임원 수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까?

[용어설명]

- 현재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과 임시계약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외국인: 국내·외 학위에 관계없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국적자

구 분	내국인(A)	외국인(B)	합계(A+B)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명	명	명

귀사의 성별, 연령별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Q2. 성별, 연령별 전체(내국인+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30대 미만	명	명	명	명	명
(2) 30대	명	명	명	명	명
(3) 40대	명	명	명	명	명
(4) 50대	명	명	명	명	명
(5) 60대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부가조사 1)

Q2-1. (Q1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성별, 연령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30대 미만	명	명	명	명	명
(2) 30대	명	명	명	명	명
(3) 40대	명	명	명	명	명
(4) 50대	명	명	명	명	명
(5) 60대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귀사의 계열별, 학력별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 본 조사는 최종학위 기준입니다. 현재 학위과정생 및 수료생도 최종학위 취득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예) 박사과정생, 박사수료생 → 석사학위 인력 수에 포함

Q3. 계열별, 학력별 전체(내국인+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5) 고졸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부가조사 2)

Q3-1. (Q1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계열별, 학력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5) 고졸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귀사의 계열별, 직급별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 직급은 기업 내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단, 직급기준이 없거나 분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직급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원급 이하: 원급 이하는 아래의 인력을 모두 포괄함

- 해당 분야에서 1년 미만의 경력을 쌓은 직원(신입직/사원 등)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
- 해당 분야에서 초기관리자급(대리/주임 등)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 시 이에 수반하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

② 선임급: 해당 분야에서 중간관리자급(차장/과장 등)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 시 이에 수반하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

③ 책임급: 책임자급의 직무를 다하는 직원으로, 학과장/학부장, 부속기관/시설의 장, 대학(원)장, 실/처장, 수석연구원/책임연구원 이상, 상급관리자(실/부장급)에 해당하는 자

④ 임원급: 해당 분야에서 임원급(대표/전무/상무/이사)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 시 이에 수반하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

Q4. 계열별, 직급별 전체(내국인+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원급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선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책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임원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부가조사 3)

Q4-1. (Q1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계열별, 직급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원급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선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책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임원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다음은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Q5.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귀사에서 **임시계약직**(임원 제외)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임시계약직을 활용하려는 업무가 계절적·한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 ② 임시계약직을 활용하려는 업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단순보조, 물리적 지원 등)
- ③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로 추가인력이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 ④ 임시계약직에 대한 물질적 보수(급여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 ⑤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채용하여 우수인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 ⑥ 기타 ()

다음은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Q6. 귀사의 2025년도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채용 예정 인력은 몇 명입니까?

- 채용 예정 인력은 내국인,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12월이며, 2025년 1월부터 응답일 기준 이전에 채용된 인력도 포함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학위과정생 및 수료생을 채용 예정에 포함하실 경우, 최종학위 취득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예) 박사과정생, 박사수료생 → 석사학위 채용 예정 인력 수에 포함

구 분	합 계
(1) 박사	명
(2) 석사	명
(3) 학사	명
(4) 학사 미만	명
합계	명

구 분	신입직	경력직	경력무관	합 계
(1) 박사	명	명	명	명
(2) 석사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 박사 또는 석사 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만 응답)

Q7. 귀사에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하시는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자사 홈페이지 공고(온라인 포함)

③ 취업·채용박람회

⑤ 교수·전문가·직원 추천, 개별접촉 등

⑦ 인턴 채용연계

⑨ 기타()

② 외부 취업사이트 공고

④ 취업알선(Head Hunter, 리크루팅 등)

⑥ 산학협력·산학장학금

⑧ 병역특례

다음은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처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Q8. 귀사의 신입 및 경력 5년차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연평균 급여(세전 기준)**를 학력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 연평균 급여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을 말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
 ※ 해당 인력의 현재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평균적인 (예상) 지급 수준을 기입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1) 신입 초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경력 5년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Q9.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게 제공되는 사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실 경우, 추후 정규직 채용 시 제공 가능한 사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내·외 워크숍 및 컨퍼런스, 학술행사 참여 지원
- ② 추가 학위취득 지원(학위취득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업무시간 인정)
- ③ 안식년(연구연가), 안식월, 단기연수
- ④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 ⑤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⑥ 주거 및 학자금, 육아 등 생활지원
- ⑦ 기타 ()

다음은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처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Q10. 귀사의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연평균 급여(세전 기준)를 학력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 연평균 급여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을 말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
※ 해당 인력의 현재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평균적인 (예상) 지급 수준을 기입

구 분	박 사	석 사
연평균	백만원	백만원

Q11.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내국인+외국인) 합계가 1명 이상인 기관)
귀사의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계약기간별 인원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 계약기간별 비중 = 2024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 계약기간의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 ÷ 전체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 × 100

구 분	1년 미만	1년	1년 초과~2년 미만	2년	2년 초과
인원 비중	%	%	%	%	%

Q12.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게 제공되는 사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실 경우, 추후 임시계약직 채용 시 제공 가능한 사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내·외 워크숍 및 컨퍼런스, 학술행사 참여 지원
- ② 추가 학위취득 지원(학위취득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업무시간 인정)
- ③ 안식년(연구연가), 안식월, 단기연수
- ④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 ⑤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⑥ 주거 및 학자금, 육아 등 생활지원
- ⑦ 기타 ()

다음은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활용 이슈에 관한 질문입니다.

Q13. 귀사에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확보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구인 과정에서 지원하는 연구인력 풀이 적음
- ②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 기술, 전공 인력 풀이 적음
- ③ 채용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인력이 적음
- ④ 안정적·장기적으로 근무할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려움(이직, 퇴사 등)
- ⑤ 성실성, 꾸준함, 협업능력 등 일반적인 태도나 자질에서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려움
- ⑥ 기타 ()

Q14. 그렇다면,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확보 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수요에 비해 해당 전공분야 졸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② 대학 교육이 이론에 편중되는 등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 거리가 있음
- ③ 기술변화, 시장환경 변화 등 수요의 빠른 변화
- ④ 임금, 복리후생 등 원하는 인력을 유인할 물질적 보상 수준의 제공이 어려움
- ⑤ 귀사의 지리적인 제약(접근성이 떨어짐)
- ⑥ 귀사가 속한 업종과 기술의 전망이 불투명함
- ⑦ 기타 ()

Q15. 귀사에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 시,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Q15-1로 이동)

② 아니오(→ Q16으로 이동)

Q15-1. (Q15 '① 예' 응답자)

그렇다면,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 시 겪으셨던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함
- 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연구개발 또는 기술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함
- ③ 의사소통, 보고서 작성, 협업, 프레젠테이션, 외국어 등 일반적인 업무역량이 부족함
- ④ 인력의 잦은 이탈로 인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 ⑤ 보유 인력의 역량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연구·기술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움
- ⑥ 기타 ()

(부가조사 4)

Q16. 귀 기관에서는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현재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 계획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Q16-1로 이동)

② 아니오(→ Q16-2로 이동)

(부가조사 5)

Q16-1. (Q16 '① 예' 응답자)

그렇다면,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적합한 내국인 연구개발인력 충원이 어려움
- ② 인건비 절감
- ③ 첨단분야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확보
- ④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능력이 뛰어남
- ⑤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통해 국제 협력, 해외진출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⑥ 기타 ()

(부가조사 6)

Q16-2. (Q16 '② 아니오' 응답자)

그렇다면,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없음
- ②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채용경로가 없음
- ③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 ④ 우수한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부족
- ⑤ 의사소통으로 인한 직무수행에 제한이 예상
- ⑥ 문화차이로 인해 조직 화합이 어려움
- ⑦ 기타 ()

※ 응답자 정보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을 위해 아래의 응답자 정보를 누락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명		연락처	직통	
소속/직위			휴대폰	
이메일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기카드

※ [보기카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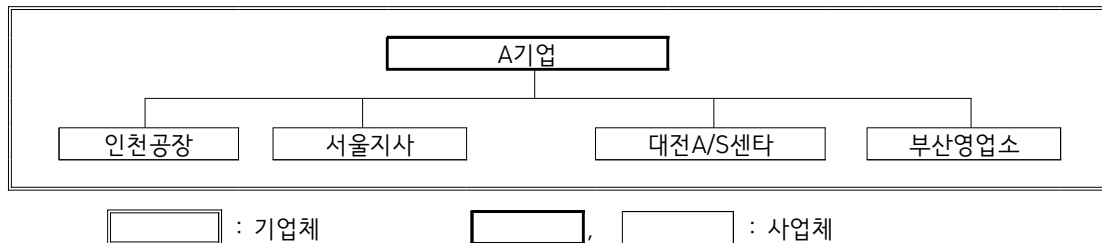
번호	업종명(중분류)	번호	업종명(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1	음료 제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	담배 제조업	50	수상 운송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51	항공 운송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5	숙박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6	음식점 및 주점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8	출판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0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1	우편 및 통신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3	정보서비스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4	금융업
24	1차 금속 제조업	65	보험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8	부동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0	연구개발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71	전문 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2	가구 제조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5	교육 서비스업
36	수도업	86	보건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1	종합 건설업	94	협회 및 단체
42	전문직별 공사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주요 용어 설명

○ 기업체(본 조사 단위)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기업체는 본사, 지사, 영업소, 물류 창고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음 (예: A기업은 기업체 개념으로서 본사, 울산공장, 서울지사, 충청지사, 동남지사와 같이 서로 다른 지역에 여러개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이 경우, 본 조사는 5개 사업체를 합산하여 조사)

예) 아래의 표와 같이 A기업은 기업체 개념으로서 본사, 울산공장, 서울지사, 대전A/S센터, 부산영업소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체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
- 사업체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비영리,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 법정 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함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 다음 3가지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로 적용하지 않음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또는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함

○ 연구개발비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과제(시험생산 및 상업화 단계의 과제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
- 다년도 사업이 포함된 경우, 1년 단위로 연구비를 계산하여 작성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연구개발인력

○ 임시계약직

- 정해진 임용기간 계약으로 귀 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연구개발인력으로, 박사후연구원, 위촉연구원, 초빙연구원, RA(Research Assistant) 등 다양한 명칭의 인력이 포함될 수 있음
- 학생연구원은 임시계약직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현재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과 임시계약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 외국인

- 국내·외 학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국적자

※ 참고. 업종별 법정 유형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대기업에 해당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3년 평균 매출액 800억 초과	3년 평균 매출액 800억 초과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초과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대기업에 해당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종업원 수

- 다수사업장 보유 기업의 경우 본사만 집계하는 것이 아닌 지사, 공장 등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집계(상시근로자 기준)

○ 경력 구분

- 신입직: 해당 분야에서 1년 미만의 경력을 쌓은 직원으로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경력직: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직원으로 채용시 경력을 인정한 자
- 경력무관: 경력 여부에 상관없이 채용하려는 자